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66호
2. 발 의 자 : 이호대 의원 외 11명
3. 발의일자 : 2019. 1. 31.
4. 회부일자 : 2019. 2. 7.

II . 제안이유

-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산과 관련한 상위법이 2016년에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함으로써 조례의 완결성을 제고하고자 함

III . 주요내용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로 함(안 제2조)
2. “시의회”를 “의회”로 함 (안 제2조, 제3조제3항)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지방회계법」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3.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9년 1월 31일 이호대 의원 등 12명의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366호로 공동 발의되어 2019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른 위임 법률 조항의 변경과 일부 자구를 수정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지방회계법 제정 경위에 대한 의견

- 1963년에 제정된 「지방재정법」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 원칙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지방재정법」 제1조).

그러나 국가소관 법령과 달리¹⁾ 「지방재정법」은 ‘예산’과 ‘회계’의 특성이 다름²⁾에도 불구하고 예산, 결산, 보조금 관리, 재정분석, 채권 등 광범위한 내용을 하나의 법률에 모두 규정하고 있었는바,

1)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등으로 재정·회계 법령이 세분화되어 규정

2) 예산과 회계의 비교

구분	예산	회계
성격	미래의 계획	실적·과거의 기록
가치관련성	가치배분	가치중립성
정치적 성격	포함	전문적 성격
목적	형평성과 효율성의 조화	신빙성 있는 정보 제공
기준	예산법규, 조성, 분석기법	회계 기준

강인재, 정성호, “지방회계법 제정에 관한 소고” 「정부회계연구」 제12권1호(한국정부회계학회, 2014.6.), p.4

이는 지방재정의 특수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며 지방재정을 둘러싼 회계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왔습니다.³⁾

-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원칙과 회계기준 등을 규정한 「지방회계법」을 2016년 5월 29일 제정하여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방회계법 시행령」 역시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결산관련 규정은 전부 삭제되었습니다.

나. 조문별 검토

- 그 동안 동 조례에는 세입·세출 결산서 등의 의회 제출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등의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제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같은 내용이 동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는 삭제되었는바,

동 조례안 제2조는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별도 의견이 없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603.,2019.2.15.)

3) 전종태, “장(長지)지방재정이 성장하다:특집: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제도의 개혁과제: 지방회계법의 필요성 및 주요내용”, 「지방재정」 2015권5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5.), p.12 ~ p.15.참조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 계 법 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18. 11. 1.]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타법개정]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